

보도시점 2024. 11. 1.(금) 09:00 배포 2024. 11. 1.(금) 08:30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 확대로 빠른 특허 확보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처리기간 14개월 이상 단축 -
- 성능 검사·평가 분야 우선심사 대상 추가로 중소·중견기업 이용 확대 기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1.(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분야에서 성능 검사·평가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분야 출원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22년부터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22.11.1)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신청된 경우 평균 1.6개월('24.9월말 기준)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보았다. 이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체 분야의 일반 심사처리기간이 15.9개월('24.9월말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14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분야 출원의 45.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손쉽게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분야 출원 4,944건 중 중소·중견기업 출원 2,239건('19.1월~'24.9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선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11월 1일자로 특허청 누리집(<http://kipo.go.kr>)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첨단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안)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2-481-8321)
	특허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강혜리 (042-481-8243)

특허청 공고 제2024-xx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3-26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특 허 청 장

반도체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

우선심사 대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또는 성능 검사·평가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아래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반도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기술에 관한 출원(예: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조명장치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신청가능 기간	‘24. 11. 1. ~ ‘25.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3조제1항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❶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❷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 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붙임 2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안) [디스플레이]

특허청 공고 제2024-xx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3-2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특 허 청 장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

우선심사 대상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설계 또는 성능 검사·평가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아래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기술에 관한 출원(예: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차량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신청가능한 기간	‘24. 11. 1. ~ ‘25.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3조제1항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❶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❷ 디스플레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 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